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
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』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2월 16일

나. 발 의 자 : 김태근, 강승수, 김성현, 김재상,
김정곤, 김정미, 박교상, 박주연,
윤종호, 이수태, 임춘구 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태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
-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
-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,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, 소상공인 간 공생공존의 여건 조성

다. 주요내용

○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

-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(안 제6조)
-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(안 제7조)
-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 (안 제8조)
- 협의회의 업무 (안 제9조)
- 협의회에 대한 지원 (안 제10조)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
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(안 제11조)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 시 고려사항 (안 제12조)

○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

-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(안 제13조)
- 조건 등의 부과 (안 제14조)
-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(안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, 제7조, 제8조, 제13조의3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시행규칙 제5조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0. 11. 24 개정 시행됨에 따라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-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,
-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
-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, 소상공인 간 상생 공존의 여건조성으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